

인천지방법원 2020. 12. 16 선고 2019나6733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인천지방법원 2020. 12. 16 선고 2019나67336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9. 18 선고 2018가단3095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재웅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현

담당변호사 유헌기

변론 종결 2020. 10. 14.

판결 선고 2020. 12. 16.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9. 18. 선고 2018가단30954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D 모하비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던 자이다.

나. 피고는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인 "E"에 판매 희망가를 38,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차량을 매물로 등록하고, "F"에도 자동차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원고도 중고차 거래업체에서 차량을 판매하기 위해서 게시하는 "G"이라는 사이트에 이 사건 차량과 동일한 종류의 모하비 차량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다. 성명불상자는 2018. 10. 10.경 피고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중고차상사 사장이라고 하며 '차가 아직 팔리지 않았으면 차를 보러 가겠다'라고 하고, 피고에게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준비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는 2018. 10. 11. 성명불상자에게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하였고, 성명불상자는 2018. 10. 12. 피고에게 원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에게 '자신이 직접 갈 수 없는 사정이 생겨 16:00경 피고의 매장으로 직원을 보내고 피고가 그 직원에게 차를 보여주면 직원으로부터 차에 이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받고 입금을 해주겠다'고 하였다.

라. 한편, 성명불상자(기록상으로는 피고에게 연락한 성명불상자와 동일인인지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는다. 일응 모두 '성명불상자'라고만 한다)는 원고에게 전화하여 원고가 판매한다는 차량과 유사한 사양의 차량을 매수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고, 자신이 차주의 형이라면서 서울 반포에 차량이 있다며 보러 오라고 하였다.

원고는 원고의 직원인 H이 이 사건 차량을 살펴보는 등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였다.

마. 피고는 2018. 10. 12.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차량등록증을 준비하였으며, 피고가 있는 서울 반포의 매장으로 온 위 H이 이 사건 차량의 상태를 살펴볼 수 있게 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16: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상태가 괜찮아 보이니 38,000,000원에 구입하겠다'는 말과 '상대방에게 더 비싸게 판 것을 직원이 알게 되면 먹는 게 너무 없어진다'며 직원에게는 판매가격을 말하지 말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리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에게 계좌번호를 요청하여 피고의 계좌번호를 받으면서 '입금내용이 모하비로 들어올 것이다. 그런데 31,300,000원으로 들어간다. 이걸 세금신고 때문에 계좌내역을 남기기 위해 잘못 들어가는 거고 그 돈을 다시 보내주면 바로 38,000,000원을 입금해 주겠다'고 하였다.

바. 한편, 위 H과 원고의 또 다른 직원은 성명불상자와 통화하여 이 사건 차량의 가격을 31,300,000원으로 정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계좌로 31,300,000원을 송금하였다. 위 H은 그 후 계약서 작성을 하고 있었다.

사. 피고는 계좌로 대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직후 성명불상자의 요청대로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계좌에 31,300,000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피고는 이후 성명불상자에게 38,000,000원을 입금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38,000,000원을 받지는 못하였고, 그제야 매장에 있던 H과 대화를 나누면서 H이 성명불상자의 직원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피고는 H에게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으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등록명의를 이전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8. 10. 15. 배우자인 I에게 이 사건 차량의 지분 1%를 이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8. 10. 12. 이 사건 차량을 확인하고 피고의 계좌로 매매대금으로 31,3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이전해주지 않고 있는바, 이 사건 소장 부분의 송달로써 피고와의 이 사건 차량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 31,3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아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다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명목의 금원 31,300,000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1,3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체받은 금원을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한 것은 피고의 별개의 처분행위일 뿐이고, 이에 관여하지 않은 원고에게 피고의 손해를 주장하며 그 반환을 거절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된 바 없다. 원고와 성명불상자 간, 성명불상자와 피고 간 매매계약이 각 체결된 것으로서 원고와 피고의 거래는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라 할 것인바, 원고와 성명불상자 사이의 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설령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금원은 단축급부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성명불상자에게 재차 돈을 송금하여 피고에게 실질적 이득이 귀속된 바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참조).

한편,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매도인이 재산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그 대가로서 금원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34432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당사자,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은 매매계약의 본질적 사항 또는 중요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성명불상자의 요청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매매대금 31,300,000원을 재차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매매대금 38,000,000원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성명불상자가 피고의 요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와 피고가 성명불상자의 사기행위를 알게 되었는데, 이 사건 차량 매매 과정에 있어 피고의 매매대금에 관한 의사는 확정적으로 38,000,000원이었던 반면, 원고는 그 매수대금을 31,300,000원으로 알고 위 금원만 지급하였으므로, 매매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 내용의 본질적 사항인 매매대금에 관하여 어떠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매매와 관련하여 직접 협의한 바가 전혀 없고, 각각 성명불상자와 연락하고 매매조건을 합의하여 달리 결정하였는데, 성명불상자는 원고와 피고 누구와도 전혀 관련이 없는 자로서 원피고 쌍방을 대리할 만한 어떠한 권원도 없는 자인 점, ③ 피고도 원고와의 매매계약은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어떠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성립을 전제로 한 원고의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성명불상자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을 성립시키거나 매매대금으로 송금된 돈을 피고에게 줄 생각 없이 일단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송금하게 한 뒤 피고에게 세금신고를 위한 임시 송금이라고 하여 피고로부터 돌려받는 방식으로 위 금액을 편취할 계획이었던 점, ②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금액은 피고가 매매대금으로 정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여 피고 역시 원고가 송금한 금액이 매매대금 지급을 위해 입금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인 점, ③ 원고가 피고 계좌로 31,300,000원을 입금한 시각은 2018. 10. 12. 17:03이고, 피고가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한 시각은 같은 날 17:08으로, 입금과 송금에 걸린 시간은 5분 정도에 불과한 점, ④ 결국 피고의 계좌는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어서 원고뿐만 아니라 피고도 성명불상자의 불법행위에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데,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않은 피고에게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정의·공평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가 성립하지 않은 매매계약 과정에서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매매계약을 진행한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다시 송금한 이 사건에서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요건으로서의 실질적 이득이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신재환

판사송한도

판사박정미